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02-2004-8963/0991

1.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 러시아 익스플로러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주식] 집합투자기구 / 종류형 (A1,C2,C4,C-W,C-H,C-e,C1,C2,C3,C4,C5)
다. 보관 •관리기간: 2012.05.21 – 2013.05.20
라. 집합투자업자: 우리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동양증권, SK증권, 아이엠투자증권, NH농협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동부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은행, 대구은행, 외환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 광주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3.01.28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①-2.-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①-2.-나.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2013.01.28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③(신설)	③-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013.01.28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⑦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⑦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PUBLIC_HSS FS SEL

*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dart.fss.or.kr 을 통해 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2013.01. 01	말소	강석훈	-숭실대 산업공학과 -KAIST 금융공학 석사 -나이스채권평가 리서치팀 -농협CA투신운용 리스크관리팀 -유리자산운용 퀀트운용팀 -우리자산운용 Global 운용팀장	2109000932
2013.01. 01	신규	옥혜은	-중앙대 신문방송학 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재무관리) 석사 -교보생명 재무팀 -우리자산운용 Global 운용팀	2109001131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다산회계법인	1년	5,089,795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 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 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 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